

6. 建設技術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106號 1993. 6. 22

1. 개정이유

공사감리와 품질관리의 제도개선 및 건설기술연구·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이 1993년 6월11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상의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교육훈련 대상자중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훈련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.
- 나. 건설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체계를 확립하고자 건설기술연구·개발 실시대상기관을 정하고, 연구·개발에 필요한 경비와 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며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건

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, 협약, 체결,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연구성과의 이용·관리등 건설기술연구·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건설기술연구기관 협의회의 설치·운영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다. 건설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건설기술개발투자권고액을 현행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안에서를 전년도 매출액의 1백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음.
- 라. 신기술지정 절차에 있어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제를 도입하였고 신기술사용료의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보호기간도 현행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연장하였음.
- 마.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대상 건설공사에 전기설비에 포함된 건설공사도 포함시켜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설계심의대상공사 및

심의횟수를 조정하고 중앙위원회의
위원수를 150인이내에서 300인이내
로 확대하였음.

바. 시공평가대상건설공사를 현행 10억원
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
하였음.

사.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
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건축공
사는 661m²이상, 토목공사 및 특수
공사는 5억원이상으로 확대하였고
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자체 안전점
검과 전문기관안전점검으로 구분하
여 전자는 매일, 후자는 년 1회이상
실시토록하는등 안전점검의 방법, 절
차등을 명시하였음.

아. 건설자재 생산자에 대하여도 품질시
험을 의무화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
할 자재의 범위를 레미콘, 아스콘,
바다모래등으로 정하였음.

자. 건설공사의 감리제가 책임감리제로
일원화됨에 따라 감리대상기관에 국
가 및 지자체의 출연기관, 지방공기
업,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등을 추가
하고 감리대상공사를 대폭 확대하였

으며 외국감리 전문회사의 활용절차
를 명시하였음.

차. 감리원의 자격, 업무범위 및 현장배
치기준을 정하였음.

카. 감리전문회사를 종합감리전문회사,
토목감리전문회사, 건축감리전문업회
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등록기준을
정하였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
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을 구체적
으로 규정하였음.

3. 의견제출

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
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7월 12일까지
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(16절지를 세
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(참조:기술진
홍담당관, 전화:503-7333)에게 제출하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
반 여부와 그 이유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
자 성명) 및 주소